

#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

## 1. 근거 및 목적

### □ 근거
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및 7조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(제12378호, '14.1.28)」 부칙 제6조

제6조(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·도지사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·공고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

-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(국토교통부 훈령)

### □ 목적

- 대중교통의 확충·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,
  - 면허제의 특성·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
- 따라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

## 2. 용어의 정의

### 가. 사업구역별 총량제

-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

### 나. 실차율

-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(시간)의 비율

- 거리실차율 : (승객승차 운행거리/총 운행거리) × 100
  - \* 총 운행거리 : 출고(영업개시)부터 입고(영업종료)까지의 거리를 말함
- 시간실차율 : (승객승차 운행시간/총 운행시간) × 100
  - \* 총 운행시간 : 출고(영업개시)부터 입고(영업종료)까지의 시간을 말함. 단, 시동이 정지된 상태는 제외.

다. 사업구역별 전체 면허대수(부제 중인 차량 제외)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

- 가동률 : (실제 영업을 한 택시 대수/총 면허대수) × 100
  - \* 총 면허대수 :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 발급된 면허대수로서 조사시점별 부제 중인 차량은 제외

### 3.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

가. 산정공식

○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총량산정

$$\text{택시 총량} = \text{전체 택시 보유대수} \times \left\{ \left( \frac{\text{현재 거리실차율}}{\text{목표 거리실차율}} \right) \times 0.8 + \left( \frac{\text{현재 시간실차율}}{\text{목표 시간실차율}} \right) \times 0.2 \right\} \times \frac{\text{현재 가동률}}{\text{안정적 가동률}}$$

다만,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(동)와 농촌(읍·면)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

- ① 인구(주민등록인구) 비율에 따라 각각 총량 산정
  - \* 도시(농촌) 면허대수 = 총 면허대수 ×  $\frac{\text{동(읍면) 인구}}{\text{전체인구}}$
  - \*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(단,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 실차율 적용)
- ②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
  - \* 도시(농촌) 면허대수 = 총 면허대수 ×  $\frac{\text{동(읍면) 면적}}{\text{전체면적}}$
  - \*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(단,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 실차율 적용)
- ③ 전체 총량 산정 = (① + ②) ×  $\frac{1}{2}$

나. 전체 택시 보유대수

-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에 사업구역 내에서 면허받은 전체 택시 대수(개인+일반)를 기준으로 산정
- 사업구역을 통합·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, 전체를 동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산정

다. 거리실차율

- 목표 거리실차율

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수	목표 거리실차율
500만 이상	60%
200만 이상 ~ 500만 미만	58%
100만 이상 ~ 200만 미만	51%
50만 이상 ~ 100만 미만	50%
20만 이상 ~ 50만 미만	49%
20만 미만	48%

\* 다만, 군 지역의 목표 거리실차율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46%를 적용한다.

- 현재 거리실차율

$$\text{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} \times \left( \frac{\text{개인택시 수집대수}}{\text{전체택시 수집대수}} \right) + \text{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} \times \left( \frac{\text{일반택시 수집대수}}{\text{전체택시 수집대수}} \right)$$

\*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.

라. 시간실차율

- 목표 시간실차율

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	목표 시간실차율
500만 이상	50%
100만 이상 ~ 500만 미만	45%
50만 이상 ~ 100만 미만	38%
20만 이상 ~ 50만 미만	34%
20만 미만	25%

- 현재 시간실차율

$$\text{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} \times \left( \frac{\text{개인택시 수집대수}}{\text{전체택시 수집대수}} \right) + \text{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} \times \left( \frac{\text{일반택시 수집대수}}{\text{전체택시 수집대수}} \right)$$

\*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

\*\*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(TIMs)에 수집된 자료 부족으로 택시

미터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공식에서 시간실차율 적용을 제외하고, 거리실차율을 100% 적용

마. 가동률

- 안정적 가동률 : 부제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

◆ 3~5부제 92%, 6~9부제 90%, 10부제 이상 88%

- 현재 가동률 : 일반 및 개인택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재면허대수(부제 차량 제외) 대비 실제 운행대수로 산정

$$\text{현재가동률} = \frac{\text{실제 운행대수}}{\text{현재면허대수(부제 차량 제외)}} \times 100$$

\* 부제로 쉬고 있는 차량은 면허대수에서 공제

\* 동 지침에 따라 총량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부제를 강화한 지역은 총량조사시 기존 부제에 따라 면허대수를 산정

- 일반·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,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

$$\frac{\text{현재 가동률}}{\text{안정적 가동률}} = \left( \frac{\text{개인택시 현재 가동률}}{\text{개인택시 안정적 가동률}} \times \frac{\text{개인택시 면허대수}}{\text{전체 면허대수}} \right) + \left( \frac{\text{일반택시 현재 가동률}}{\text{일반택시 안정적 가동률}} \times \frac{\text{일반택시 면허대수}}{\text{전체 면허대수}} \right)$$

바.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

-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적 특수성 반영 필요에 따라 가목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총량의 10% 범위에서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

\* 택시대당인구수=(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) / (사업구역의 면허대수)

\*\*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이상 지역은 제외 [전체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인구수 (2029년까지 적용) : 312명/대]

-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“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”에서 월평균 실차율과 택시 운송수입 추세를 감안하여 택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. 특히, 주 40시간 월급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
-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은 사업구역내 노조·사업자 대표, 교통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 등 8~1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대표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은 자율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,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/3 이상 동의하는 경우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
- 총량을 자율조정하는 지자체는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, 구성원, 논의 내용 등 회의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택시 총량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

#### 4.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

##### 가. 조사 시행시기

-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조사자료는 조사 시행 시점 이전 6개월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것

##### 나. 조사자료

- 실차율, 가동률 등 조사자료는 6개월 이상의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(TIMs) 자료를 전수 활용하여야 함
  - 다만,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가 다목의 조사표본에 미달한 경우 다목의 조사대수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택시미터기 등 자료 활용 가능
    - 예) A사업구역에서 법인택시 30대, 개인택시 10대의 운행정보만 TIMs에 수집된 경우 개인택시 5대 이상 표본을 수집하여 총량 산정에 반영

- 가동률 조사 시 실제운행 대수는 1일 대당 8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, 3시간 미만 운행은 0대로 처리

◆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적용

4시간미만 : 0.375대, 5시간미만 : 0.500대, 6시간미만 : 0.625대, 7시간미만 : 0.750대,  
8시간미만 : 0.875대

- 가동률은 일반·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적용

다. 택시운행정보(TIMs)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표본

- 조사업체 수 : 실차율·가동률 조사업체는 그 지역 업체수의 30%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4개 이상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전 업체 대상 조사
- 조사대수(총 면허대수 기준)
  - 인구 300만 이상 도시 : 표본율 2% 이상
  - 인구 100~300만 도시 : 표본율 5% 이상
  - 인구 100만 이하 도시 : 표본율 10% 이상
  - \* 조사표본은 면허대수에 관계없이 개인, 일반택시를 각각 50:50 비율로 표본선정하되 표본율 적용결과 조사대수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대 조사
- 조사표본 선정방법(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)
  -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
  -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
  - (예) 특정 끝자리 번호를 추첨 후 동일번호로 끝나는 모든 택시를 전수 조사

라. 조사기관 선정

- 교통관련 연구기관, 교통정책이나 조사·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등록된 기관

## 5.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

### 가.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

-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·도지사가 수립
  - 단, 사업구역을 통합·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수립
  - 사업구역의 일부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·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사업구역을 단위로 수립

### 나.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

-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은 '29년을 초과할 수 없음

  - 1) 총량계획 수립 후 현재 거리실차율, 현재 시간실차율 또는 현재 가동률이 관할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목표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상회할 경우
  - 2) 사업구역통합 등의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
  - 3) 택시운행정보시스템(TIMIS) 데이터 수집 상황 등에 따라 3항의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등을 수정한 경우
  - 4)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### 다. 한정면허에 대한 관리

- 시·도지사는 신규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면허를 발급하여야 함. 다만, 기발급된 한정면허의 경우 면허 발급 사유(주한유엔군 전용 등) 소멸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허의 갱신 등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

라.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

-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(재산정 포함)하는 시·도지사는 「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」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
  - 「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」는 사업구역별 총량산정이 국토 교통부의 「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」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(별표 1 참고)을 심의
  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 「감차위원회」를 구성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 심의 가능
- 심의위원회은 노조·사업자 대표, 교통전문가, 시민단체대표,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7인 이상이어야 함

마.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차율·가동률을 다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함

바. 총량제 계획의 검증 및 재산정 조치

- 시·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택시 총량제 계획(총량제 조사보고서 첨부)을 국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
-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택시 총량제 계획이 본 지침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검증함
- 검증결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「택시정책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산정토록 조치함
- 시·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
-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함

사. 시행시기

- 본 지침에 따라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

## 6. 행정사항

- 택시 총량제 조사보고서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
- 시·도지사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
-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
- 시·도지사는 2020년부터 2024년 기간에 적용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하여 택시를 신규 면허한 사업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총량을 2025~2029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
  - 총량을 유지하는 시장·군수 등은 소속 사업구역내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·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, 그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